

6.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中 改正法律 (案)立法豫告

建設交通部公告 第1996-133號 1996. 4. 29

1. 개정이유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공사시행에 따르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공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함으로써 2000년 1단계 개항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신공항건설사업범위에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화물등의 수송에 필요한 철도·도로외에 항만시설의 건설을 포함시키는 등 사업범위를 조정함.

나.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실시계획의 변경시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변경 승인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진입도록등 부대공사에 대하여도 이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건축법에 의한 건축위원회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마.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등의 허가등 13개 법률에 대한 의제조항을 보완 또는 신설함.

바. 주요 공항시설(여객터미널, 관제탑등)의 건축에 있어 그 특성과 기능에 부합되도록 특수기술 및 특수장치를 이용하거나 건물의 구조형태상 소방, 방재, 대피시설등에 대한 관련법규정의 동등수준이상의 효과

가 있다고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사. 여객터미널등 복합적 기능과 특성을 갖는 주요공항시설의 경우 공사의 성질상·기술관리상 건축·전기·전기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 통합 발주할 수 있도록 하여 연계공정에 대한 시공관리 및 하자책임등을 명확히 하고 공사의 품질확보를 도모함.

아. 정기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에만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소음방지대책을 건설중인 수도권신공항에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소음으로 인한 문제에 조기 대처토록 함.

자. 신공항건설사업에 필요한 건설자재 생산시설을 공사기간중에 한하여 현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차.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완공된 시설물

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준공확인을 함으로써 개별법에 의한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신국제공항건설기획단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전화: 504-918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신국제공항건설기획단 개발과(504-91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혼을 현장에 한국혼을 세계에